

◎법무부고시 제2026-160호
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1의 2] 장기체류자격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에 관한 자격 기준과 대상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01일

법무부장관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 자격 기준과 대상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 1의2] 중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분야)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분야는 각 호와 같다.

1. “첨단산업 분야”란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용하는 분야를 말한다.
2. “과학기술 분야”란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이 공계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용하는 분야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 기준과 대상) 최우수인재(Top-Tier)의 자격 기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

1.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은 [별표1]과 같다.
2.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은 [별표2]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(제3조 제1호 관련)

1. (자격 기준)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의 자격 기준(요건)은 다음과 같다.
가. (학력) 아래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(대학)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일 것

-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: Engineering and Technology
-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: Engineering
- ⑤ US News &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
- ⑥ US News &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

나. (경력) 아래에서 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정부주도 연구소, 위 '가'에 해당하는 대학의 연구소, 아래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 중 하나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

(기업)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

-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
-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
-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다. (소득) 연간소득이 전년도(전년도)의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3배 이상인 사람

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은 다음과 같다.

- (기준)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(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)의 1인당 국민총소득
- (산정방법) 기본급, 상여금, 각종 수당 등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을 합한 세전 금액

라. (추천)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

2. (대상)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가. 제1호 각 목의 기준(요건)을 모두 충족한 사람

- 나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중 하나의 기준(요건)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목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4배 이상인 사람(단,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
- 다. 제1호 다목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(요건)을 충족한 사람으로서, 국내 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(단,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)
- 라.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(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 등)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
- 마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[별표2]

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(제3조 제2호 관련)

1. **(자격 기준)**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의 자격 기준(요건)은 다음과 같다
- 가. (경력)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) 아래에서 정하는 세계 100위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(PI) 또는 조교수 이상
 - 2) 아래에서 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국·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
 - 3)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

(대학 연구소)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일 것

-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: Engineering and Technology
-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: Engineering
- ⑤ US News &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
- ⑥ US News &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

(기업 부설연구소)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

-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
-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
-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나. (사업화) 3급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인 자

다. (논문) HCR 명단(논문 피인용 상위 1% 선정) 등재자 또는 Science, Nature 등 국제학술지에서 선정한(올해의 최고연구 등) 대표 논문 저자

라. (수상) 노벨상,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마. (추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

2. **(대상)**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(Top-Tier)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가.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(요건) 중 하나 이상의 기준(요건)을 충족하고 마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

나.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(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 등)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제1

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

다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에 준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로 “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 (Top-Tier) 추천 심사위원회” 에서 인정한 사람(단,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

라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